

# 제9강 관세정책과 관세율제도

강 의 : 관세청 정재완 박사



국세공무원교육원

## <주요 강의내용>

1.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
2. 관세율의 종류
3. 기본관세
4. 국제협력관세(양허관세)
5. 일반특혜관세(GSP)
6. 덤핑방지관세와 상계관세
7. 긴급(특정국물품긴급)관세
8. 특별긴급관세
9. 관세율의 적용순서

## 1.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

- 무역정책은 관세정책과 비관세정책으로 구성
  - 관세정책 : 관세 부과 정도와 그 구조로서 무역에 영향
  - 비관세정책 : 수출입에 대한 직접적인 제한이나 금융, 행정상 수단을 동원하여 무역에 영향
  
- 관세정책의 수단
  - 관세율정책 : 관세율을 올리거나 낮추는 것으로, 또는 그 구조를 변경하는 것으로 특정한 정책목표를 추구
  - 보세정책 : 관세부과의 유보로 특정한 정책목표를 추구
  - 감면세 정책 : 정해진 관세율을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경감
  - 분할납부정책 : 정해진 관세액을 분할하여 납부하도록 함
  - 환급정책 : 이미 징수된 관세를 특정 정책목표를 위해 돌려 줌

## 2. 관세율의 종류

종 류	공포형태	종 류	공포형태
기본관세	관세법	일반특혜관세	대통령령
잠정관세	관세법시행령	계절관세	재정경제부령
편의관세	관세법시행령	상계관세	재정경제부령
조정관세	대통령령	덤핑방지관세	재정경제부령
할당관세	대통령령	긴급관세	재정경제부령
보복관세	대통령령	특정국물품긴급관세	재정경제부령
국제협력관세	대통령령	특별긴급관세	재정경제부령

### 3. 기본관세

- 수입 또는 수출물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는 것은 그 나라의 주권에 해당
- 대부분의 나라는 법률로서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율을 정하여 적용(우리나라는 수입물품을 3,063개로 구분하여 기본관세를 설정)
- ◆ 현행 우리나라의 관세율은 기초원자재의 관세율은 낮고 중간재와 완제품의 관세율은 높은 ‘산업내 경사관세’구조와, 동일한 가공단계에서는 산업이 달라도 같은 관세율 수준을 유지하는 ‘산업간 균등관세율’ 구조
- ◆ WTO는 다자간 협상을 통해 회원국의 관세율 수준을 최대한 낮추거나 철폐하는 것으로 자유무역을 추구

## 4. 국제협력관세(양허관세)

- 각국이 법으로 정한 기본관세율과는 별개로 다자간 또는 양자간 협상에 의해 양허한 관세율
- 양허관세율은 기본관세율 보다 높거나 같게 양허한 경우에는 실제 적용되지 아니하지만 각국의 관세율 인상예 있어 사실상 가이드 라인으로서 의미
  - 기본관세율 보다 낮게 양허한 경우는 실효성을 가지고 적용
- 다만, UR결과 시장이 개방된 농림축산물에 대해 적용되는 양허관세는 국내외 가격차이 상당을 관세화 하여 매우 높은 관세율로 설정되고, 실효성을 가지는 특징

## 5. 일반특혜관세(GSP)

- ◆ 일반특혜관세(GSP)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무역을 촉진하기 위해 부여하는 특혜의 성격
- ◆ WTO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예외 인정규정을 통해 GSP 적용을 허용
- ◆ 우리나라는 2000년 부터 48개 최빈개발도상국에서 수입되는 80개 품목에 무관세를 적용
- 일반특혜관세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수입신고를 할 때 원산지 증명서(C/O)의 제출이 필요

## 6. 덤핑관세와 상계관세

- 이 두가지는 불공정무역을 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부과
- 덤핑방지관세 : 외국상품이 당해 물품의 공급국에서 소비되는 동종물품의 통상 거래가격을 의미하는 '정상가격' 이하로 수입되어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
  - 덤핑 차액만큼을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과세
- 상계관세 : 외국에서 생산 또는 수출과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산업이 실질적인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
  - 당해 보조금 또는 장려금액만큼을 기본관세에 추가하여 과세

## 7. 긴급(특정국물품긴급)관세

- 긴급관세 :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해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
- 긴급관세 부과를 위해서는 WTO 긴급수입제한조치 위원회에 통보하고, 이러한 조치로 피해를 보는 이해당사국과 협의하여 적절한 보상을 하여야 함
- 특정국물품긴급관세 : 중국이 WTO 가입조건으로 2013.12.10. 까지 중국산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피해에 별도의 긴급관세 부과를 인정함에 따라 요건이 충족될 경우 부과가 가능한 긴급관세



## 8. 특별긴급관세

- ❑ UR결과 시장을 개방한 농림축산물에 그 대상
- ❑ 이러한 물품의 수입량이 급증하거나(물량기준), 수입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하락한 경우(가격기준) 부과 가능
- **물량기준 적용** : 양허세율의 1/3까지 추가하여 과세가능
- **가격기준 적용** : 가격차이에 따라 하락가격의 최고 90%까지 추가관세 부과 가능

## 9. 관세율의 적용순서

### 1순위 : 산업보호 목적의 관세

덤핑방지관세, 보복관세, 긴급관세,  
특별긴급관세, 상계관세, 특정국물품긴급관세

### 2순위 : 교역촉진 목적의 관세

국제협력관세(FTA 등), 편익관세(3순위 내지 7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)

농림축산물양허관세(세율이 높은 경우에도 5, 6보다 우선

### 3순위 : 조정관세, 할당관세, 계절관세(할당관세는 4순위보다 낮은 경우에만 우선적용)

### 4순위 : 일반특혜관세

### 5순위 : 농림축산물에 대한 양허관세

### 6순위 : 잠정관세

### 7순위 : 기본관세